

# 한국원자력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	정	1984. 05. 18.
개	정	1992. 03. 27.
개	정	1993. 01. 15.
개	정	1998. 05. 29.
개	정	1998. 10. 30.
개	정	2001. 01. 01.
개	정	2001. 01. 29.
개	정	2002. 10. 09.
개	정	2003. 08. 18.
개	정	2004. 10. 28.
전문개정		2006. 05. 25.
개	정	2007. 11. 26.
개	정	2008. 05. 29.
개	정	2008. 12. 11.
개	정	2009. 11. 10.
개	정	2010. 10. 21.
개	정	2012. 05. 17.
개	정	2012. 08. 10.
개	정	2012. 10. 25.
개	정	2013. 10. 24.
개	정	2014. 08. 08.
개	정	2014. 10. 30.
개	정	2015. 08. 07.
개	정	2015. 11. 09.
개	정	2016. 05. 12.
개	정	2017. 08. 18.
개	정	2018. 08. 10.
개	정	2019. 11. 05.
개	정	2020. 10. 21.
개	정	2022. 08. 12.
개	정	2022. 10. 26.
개	정	2023. 05. 16.

## 제 1 장 총 칙

제1조 (총칙)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50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가입하여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3조 (회비 등) (2022. 08. 12. 개정)

①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가. 정회원 : 20,000원 (대학원 재학생은 5,000원) (2022. 08. 12. 개정)

나. 학생회원 : 면제 (2008. 05. 29. 개정)

2. 연회비

가. 정회원 : 50,000원 (대학원 재학생은 20,000원) (2022. 08. 12. 개정)

나. 학생회원 : 5,000원 (2022. 08. 12. 개정)

다.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라.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및 명예회원 : 면제 (2019. 10. 24. 신설)

3. 평생회비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는 평생회비로 인정하여 연회비를 면제한다. (2019. 10. 24. 개정)

② 연회비는 매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020. 10. 21 개정)

③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춘/추계학술발표회 등록 시 회원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19. 10. 24. 신설)

## 제 2 장 사 업

제5조 (회지 및 간행물의 발행) 학회는 년 4회 이상 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지이외의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문을 게재한다.

제6조 (간행물의 배포) 회지는 희망하는 회원에게 유료로 배포한다. 다만, 국내외 학회,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교류 할 수 있으며, 기타 간행물은 실비가격으로 회원, 비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제7조 (강연회의 개최) 학회는 매년 2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은 원자력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향상을 위한 특별강연으로 구분한다.

제8조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의 개최)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를 개최한다.

## 제 3 장 포 상

제9조 (포상)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원자력에 관한 학술발전 및 원자력기술의 향상 또는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규정) 포상에 관한 기준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 제 4 장 임 원 등

제11조 (선출직 평의원 선거) (삭제)

제11조의 2 (당연직 평의원) ① 정관 제2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평의원은 특별회원의 대표 또는 단체장 중 20명 이내로 한다. (2012. 08. 10. 개정)

② 제1항의 당연직 평의원은 학회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해당연도에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정관 제2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직선평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008. 12. 11. 신설) ③ 제2항의 당연직평의원 선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2008. 12. 01. 01. 신설)

제11조의 3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① 평의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직선평의원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제11조의 4 (임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① 임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임원 선출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 부여한다.

제12조 (이사의 회무 분장) 각 이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2018. 08. 10. 개정)

### 1. 총무이사 :

- 인사, 문서, 기획, 섭외, 서무 일반,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 업무.

### 2. 학술이사 :

- 학술행사, 포상 및 장학위원회 관련 업무. (2020. 10. 21. 개정)
- 춘·추계 학술발표회 업무
- 연구부회 관련 업무 (2020. 10. 21. 신설)

### 3. 사업이사 :

- 연구용역, 산학협동, 국내 타학회와의 교류 등에 관한 업무.
- 고급정책연구소 관련 업무.
- 신규사업 발굴 관련 업무 (2020. 10. 21. 신설)

4. 편집이사 :
  -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재무이사 :
  - 예산, 결산, 출납 및 금전관리,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 학회 예산확보에 관한 업무 (2020. 10. 21. 신설)
6. 홍보이사 :
  - 소식지(뉴토피아) 발간, 대내외홍보 등에 관한 업무.
  - 원자력소통위원회 관련 업무 (2022. 10. 26. 개정)
7. 국제협력이사 :
  - 외국 학회와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협찬 국제기구(IAEA, NEA 등)와의 협력 등에 관한 업무. (2018. 08. 10. 신설)
8. 대학·청년이사 :
  - 학생회원 관리, 학생회원의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018. 08. 10. 신설)
  - 포상 및 장학위원회 관련 업무 (2020. 10. 21. 신설)
9. 기획이사 :
  - 기획에 관한 업무, 학회 장기발전 전략 수립,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에 관한 업무. (2018. 08. 10. 신설)
  - 원자력이슈위원회 관련 업무 (2022. 10. 26. 개정)
10. 특임이사 :
  - 정관 등 규정관리에 관한 사항 (2020. 10. 21. 신설)
  - 학회장이 부여하는 과업 등에 관한 업무.

제12조의 2 (부회장 선출) 5명의 부회장 중 3명은 연구계, 산업계, 학계에서 각 1명씩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은 분야 구분 없이 특임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사무의 인계) 신규 임원은 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를 행한다.

제14조 (사무국) ①학회의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단법인체 업무관리.
2. 직인관리, 문서관리, 회원관리, 회비징수 등 일반사무.
3. 각 임원 및 각종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상호 관련되는 업무의 조정 및 협조.
4.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학술발표회 등 각종회의 개최에 관한 준비 및 지원.

5. 학회업무 중 타 부문에 속하지 않는 기타업무.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실장, 팀장, 대리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관련 채용 규정에 따라 선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022. 10. 20. 개정)

④회장은 실장, 팀장, 대리 및 직원을 임명한다.

##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5조 (기능)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본장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이하 “학회지 등”이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009. 11. 10. 개정)
2. 학술간행물 국제우수학술지명록 등재 추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위호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 10인 이내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 10. 30. 개정)

②위원장은 편집이사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 동의로 회장이 위촉하며, 부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2014. 10. 30. 개정)

③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2009. 11. 10. 개정)

④위원장 및 편집이사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4. 10. 30. 개정)

제17조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부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 11. 10. 개정)

②제15조 제2호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편집이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2009. 11. 10. 개정)

③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편집이사는 제15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학회지 등의 편집 및 발간 결과와 학술간행물 국제우수학술지인명록 등재 추진 및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 11. 10. 개정)

④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당연직 Editor in Chief가 되고, 부편집위원장은 당연직

Executive Editor, 편집위원은 당연직 Editorial Board member가 된다.

(2014. 10. 30. 신설)

제18조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서면결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중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분과위원회) (2009. 11. 10. 삭제)

제21조 (소위원회) (2009. 11. 10. 삭제)

제22조 (기타운영사항) (2009. 11. 10. 삭제)

## 제 5 장의 2 포상 및 장학위원회

제20조 (기능)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장학위원회 (본장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력 관련 포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
3. 기타 장학사업에 부대되는 사항.
4. 위호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자 및 학술이사(2인)와 대학청년이사(2인)가 된다. (2020. 10. 21. 개정)

③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3. 05. 16. 개정)

제22조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학술이사가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학술이사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관련 수상자 선정 결과 보고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의 3 (서면결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중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 6 장 연구부회

제23조(기능)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술회, 강연회 등의 기획 및 운영, 발표논문 심사 및 세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위호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연구부회의 구성 등) ①학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연구부회를 둔다.

1. 원자로시스템기술 (Division of Reactor System Technology)
2. 원자로물리 및 계산과학 (Division of Reactor Physics and Computational Science)
3. 원자력시설해체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Division of Nuclear Facility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2017. 08. 18. 개정)
4.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Division of Nuclear Fuel and Materials)
5. 원자력 열수력 (Division of Nuclear Thermal Hydraulics) (2017. 08. 18. 개정)
6. 원자력 안전 (Division of Nuclear Safety) (2017. 08. 18. 개정)
7. 방사선방호 (Division of Radiation Protection) (2017. 08. 18. 개정)
8. 방사선 이용 및 기기 (Division of Radiation Utilization and Instrumentation) (2017. 08. 18. 개정)
9. 양자공학 및 핵융합기술 (Division of Quantum Engineering and Nuclear Fusion)
10.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 (Divis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Technology) (2010. 10. 21. 개정)
11. 원자력정책, 인력 및 협력 (Division of Nuclear Policy, Human Resources and Cooperation)

12. 원자력계측제어, 인간공학 및 자동 원격 (Division of Nuclear I&C, Human Factors and Automatic Remote Systems)

②연구부회 간의 조율을 위해 연구부회협의회를 둔다. 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2023. 05. 16. 개정) 위원은 연구부회장 12인과 학술이사 2인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020. 10. 21. 개정)

③회원은 본인이 소속될 연구부회를 선택한다.

④12개의 연구부회에는 연구부회장 및 차기 연구부회장을 두며 연구부회 회원들이 해당 연구부회에 소속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 후 회장에게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차기 연구부회장은 연구부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연구부회장이 된다.

⑥연구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구부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기 연구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포함한다.

⑦연구부회에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연구부회의 임무) 연구부회는 매 회기마다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장 지부 및 분회

제26조 (지부설치) ①정회원 50인 이상인 지역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인 직장에서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학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그룹으로서 청년지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정회원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학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그룹으로서 학생회원으로 구성되는 학생지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정회원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1. 26. 신설)

④국외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정회원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지부임원) ①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 1 인
2. 부지부장 : 1 인



3. 총 무 : 1인

4. 감 사 : 1 인

②학생지부의 경우는 1항의 임원 외에 1인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007. 11. 26. 신설)

제28조 (임원의 선출)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정회원 (학생지부의 경우는 학생 회원) 중에서 지부총회시 지부회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총무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2008. 5. 29. 개정)

제29조 (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 (학생지부 임원의 경우는 1년) 으로 한다. 지부장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임원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정관 제 3 장의 사항을 준용한다. (2008. 5. 29. 개정)

제30조 (지부규약의 제정) 지부는 정관 및 시행세칙 취지에 준하여 지부규약을 만들어야 하며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

제31조 (경비의 보조) 학회는 지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예산, 결산보고) 지부는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실적을 매년 1월 10일 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분회의 설치) ①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회를 둘 수 있다.

②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되 지부가 설치된 지방의 분회는 지부장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그 외 지방의 분회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 8 장 고급정책연구소 (2007. 11. 26. 개정)

제34조 (고급정책연구소) ①원자력기술 및 정책에 관한 수탁 및 자체연구, 자문 및 평가, 원자력기술·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급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05. 16.)

③연구소에는 약간명의 연구전담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기타 조직,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9 장 자문위원회 등 (2007. 11. 26. 신설)

제35조 (최고자문회의) ①회장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반적인 발전방향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고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최고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을 역임한 자
2. 15인 이내의 원자력 관련 주요 인사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임원의 임기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05. 16.)

## 제 10 장 원자력이슈위원회 및 원자력소통위원회 (2022. 10. 26. 개정)

제36조 (기능) ①정관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자력이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원자력 관련 사회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2. 원자력기술의 발전과 원자력안전에 필요한 제반 정책 및 기술현안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②정관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원자력소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과 소통한다.
2. 원자력관련 정책(안)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안한다.
3.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제37조 (구성 등)

①원자력이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추가로 해당사안의 전문가를 10인 이내로 한시적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수석부회장이 원자력이슈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05. 16.)

③원자력이슈위원회 위원은 연구부회장 12인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연구부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05. 16.)

④기획이사 2인은 원자력이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전체 간사를 지명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과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사안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⑥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또는 위원장의 위임으로 위원회를 주재하고 각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원자력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홍보이사 2인(당연직 위원)

3. 위원 10인 이내

⑧학계 부회장이 원자력소통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05. 16.)

⑨원자력소통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⑩원자력 소통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개정 2023. 05. 16)

⑪원자력소통위원장 유고시에는 소통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효율적이고 일관된 원자력소통위원회 기능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다.

## 제 11 장 보 칙

제38조 (회의록)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연구부회, 각종 위원회 및 지부 등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규정제정) (2007. 11. 26. 삭제)

제40조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이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부 및 분회는 이 세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1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1년 1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2년 10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회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당연직평의원을 최초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직선 평의원회의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이 경우 2010년도에는 별도의 당연직평의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2009. 10. 29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기존 포상 및 장학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21조 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기존 소통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39조 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경과조치) 2017년도 11월 20일부로 임기가 시작된 원자력이슈위원회 임명직위원의 임기종료를 2018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회비 등)에 관한 개정 조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